

자동차 주소지변경·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

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(☎ 044-201-3844)

▶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청기간과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을 연장하도록 “자동차등록령”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사·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(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)하도록 하였으나,

- 2013년 12월 19일일부터는 변경등록기간이 30일로 연장되어 짧은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할 예정입니다.

- 또한,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을 3개월(미신청시 과태료 50만원 부과)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법적 강제조항이 완화될 예정입니다.

- 이는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(6개월)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 > 자동차 주소지변경·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

<자동차 변경등록신청 민원 불편해소>

▶ 추진배경 :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불편 해소

▶ 주요내용

- ① 자동차 변경등록 기간연장(15일 → 30일)
- ② 상속이전등록 기간연장(3개월 → 6개월)

▶ 시행일 : 2013.12.19.